
[사]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2026년 정기총회

2026. 3. 24. [화]



2026년 정기총회 식순

일시 | 2026.03.24(화) 10:00~12: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1부」	개회식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장영호 회장	
	축사	국회의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김종호 회장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이재순 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정수호 과장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기총회	성원보고 안건심의 및 의결	
「2부」	2025년 발전기금 기탁자 감사패 전달식	- 장영호 회장 CLK(주) 대표이사 - 이윤상 명예회장 (주)유성 회장 - 이철무 수석부회장 (주)미드미네트웍스 대표이사 - 조세윤 부회장 (주)씨앤디플래닝 대표이사 - 김선관 부회장 삼일산업(주) 대표이사 - 정명숙 부회장 씨앤에이개발(주) 대표이사 - 이원직 부회장 (주)미도리얼코 대표이사 - 심현태 부회장 (주)엠비앤홀딩스 대표이사 - 이 혁 부회장 (주)혁본 대표이사 - 손병석 부회장 비에스글로벌(주) 대표이사 - 고승일 디지털정책분과위원장 (주)나소스씨앤디 회장 - 안상근 대표이사 (주)나소스씨앤디 - 최지태 대표 CLK(주)	
	협회교육 우수강사 시상식	- 박동수 (주)유성 - 황용운 (주)지피티코리아	- 이인권 CLK(주) - 박진주 (주)시너지랩스
	강연	CLAUDE SKILLS & COWORK 활용 마케팅 기획 업무 생산성 향상 강연자 박진주 대표 (주)시너지랩스	
	폐회선언	장영호 회장 오찬이동 [장소: 물고기자리(02-548-3392) 서울 강남구 언주로133길 18]	

*식순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I	협회 연혁	1
II	협회 이사 명부	3
III	안건 심의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06
	제2호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14
	제3호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6
	제4호 2026년도 사업계획(안)	31
	제5호 임원 (이사) 선출의 건	46
	 [별첨]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49

I. 협회 연혁

- ◆ 2018. 08 (사)한국부동산분양마케팅협회 발족
- ◆ 2018. 10 발기인 총회 (초대 이윤상 회장 취임)
- ◆ 2019. 0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국토교통부 설립허가(제134호)]
- ◆ 2020. 06 분양대행업 제도화를 위한 국토부 정책간담회 개최
- ◆ 2020. 12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 지정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0-1089호)
- ◆ 2021. 05 국토부 주택기금과/토지정책과 간담회 개최
- ◆ 2021. 06 협회 디지털정책분과위 출범
- ◆ 2021. 08 (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협약
- ◆ 2021. 09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호남지회 개회
- ◆ 2022. 02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가입
- ◆ 2022. 04 (사)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업무협약
- ◆ 2022. 06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 ◆ 2022. 09 한성대학교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 2022. 11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 참가
- ◆ 2022. 12 (사)건설산업정보원 업무협약
- ◆ 2023. 01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국회 입법공청회 개최
- ◆ 2023. 02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업무협약
- ◆ 2023. 09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정책간담회 개최
- ◆ 2023. 09 국회 「분양대행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 2023. 11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 주관 개최(국회)
- ◆ 2024. 02 : 2024 서울 매력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선정
- ◆ 2024 .04 : 세종대 산업대학원 MOU 체결
- ◆ 2024. 05 : 정관변경 승인 (협회명칭변경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 2024. 05 : 22대 국회 개원기념 부동산정책 입법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 ◆ 2024. 07 : 2024 헤럴드경제 브랜드 대상 : 민갑협회 교육부문
- ◆ 2024. 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정책간담회
- ◆ 2024. 11 : 제9회 부동산산업의날 참가
- ◆ 2024. 11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책간담회 개최
- ◆ 2024. 11 : 수원도시공사 MOU 체결
- ◆ 2025. 0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 정책간담회
- ◆ 2025. 02 : 2025 서울 매력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사업 수행기관 선정
- ◆ 2025. 0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 정책간담회
- ◆ 2025. 05 : 생성형 AI와 노코드 자동화툴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세미나 개최
- ◆ 2025. 06 :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 2025. 10 : S.L. 포럼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 ◆ 2025. 11 :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참가
- ◆ 2025. 11 : 2025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 고용친화부문

Ⅱ. 협회 이사 명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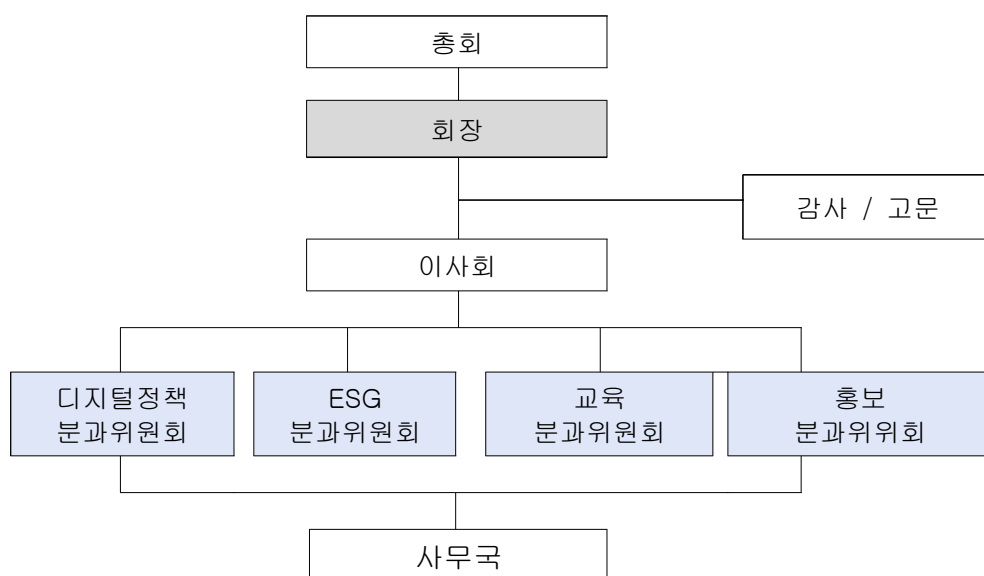
협회 이사 명부

□ 이사 명부 : 이사 17명 / 감사 1명

(※가나다순)

구 분		성 명	소 속
회장	이사	장영호	CLK㈜
수석부회장	이사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명예회장	이사	이윤상	㈜유성
부회장	이사	김국기	㈜더큐브그룹
부회장	이사	김국진	㈜국진
부회장	이사	김병수	㈜루시드프로모
부회장	이사	김선관	삼일산업㈜
부회장	감사	박형남	신림씨앤디㈜
부회장	이사	손병석	비에스글로벌㈜
부회장	이사	안상근	㈜니소스씨앤디
부회장	이사	안성우	㈜직방
부회장	이사	심현태	㈜엠비앤홀딩스
부회장	이사	이준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이사	이혁	㈜혁본
부회장	이사	임민섭	㈜상림디엠텍
부회장	이사	정명숙	C&A개발㈜
부회장	이사	조세윤	㈜씨앤디플래닝
부회장	이사	천연재	㈜애드파워

□ 조직도



Ⅲ. 안건 심의

- 제1호 정관변경의 건
- 제2호 2025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 제3호 202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4호 2026년도 사업계획(안)
- 제5호 임원 (이사) 선출의 건

의안번호	제1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6. 3. 24.	

정관 변경의 건

제 출 자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제출년월일	2026. 3. 24.

1. 제안사유

- 1) 현행 정관(제2조 목적, 제5·6조 사업)은 협회의 현재 사업 범위와 조직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교육 외 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수입원의 근거 조항이 미흡함.
- ② 정관상 이사회 개최 횟수(연 2회)와 실제 운영(매월 정기이사회 계획) 간 괴리가 있음.
- ③ 교육과정 수료자 및 자격인증 취득자 등 새로운 회원 유형의 가입 근거 및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의결 방법의 근거 규정이 미비함.
- ④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제안근거

1) 정관 제42조 [정관의 변경]

정관 제42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변경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때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안내용

가. 주요내용

- (1) 협회의 목적(제2조)을 확대하여 부동산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디지털 혁신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을 명시함.

- (2) 일반사업(제5조)에 데이터·정보 플랫폼 구축, 자격인증·경력 관리, 취업지원·인턴십 연계, 정부 위탁·보조금 사업 수행 등 4개 항목을 신설함.
- (3) 특별사업(제6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배포, 자격과정 운영 및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부대사업을 추가함.
- (4) 회원 유형(제7조)에 교육회원을 신설하여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자격인증 취득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5) 총회 의결방법(제25조)에 전자적 수단(화상회의·전자투표)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허용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을 출석으로 인정함.
- (6) 이사회 소집(제28조)의 정기이사회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함.
- (7) 분과위원회(제31조의2)의 위원장 위촉 기준과 이사회 건의 권한 규정을 신설함.
- (8) 재원(제35조)에 교육·연수 수수료, 자격검정 수수료, 정부 보조금·위탁사업 수입, 출판물·콘텐츠 판매 수입을 신설함.

나. 개정조문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부동산 마케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종

전의 제8호를 제12호로 한다.

8. 부동산 마케팅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9. 부동산 마케팅 종사자의 자격인증·능력검정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업
10. 회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및 고용촉진 사업
11.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수행

제6조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배포
2.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자격과정 운영
4.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교육회원으로 구성한다.

3. 교육회원은 법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관련 기업 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서면의결 등) 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적 수단(화상회의, 전자투표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은 출석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연 2회”를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7호로 한다.

4. 교육·연수 수수료 및 자격검정 수수료
5. 정부 보조금 및 위탁사업 수입
6. 출판물·콘텐츠 판매 수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 이 법인은 <u>주택법</u> <u>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분양대</u> <u>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무 수</u> <u>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과</u> <u>제도개선 등을 추구함으로써</u> <u>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u> <u>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u> <u>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목적) ----- <u>부동산 마케</u> <u>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u> <u>전과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부</u> <u>동산 마케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u> <u>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u> ----- ----- -----.
제5조(일반사업) 생략	제5조(일반사업)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부동산 마케팅 관련 데이터의</u> <u>수집·분석 및 정보 플랫폼 구</u> <u>축·운영</u>
<u><신 설></u>	9. <u>부동산 마케팅 종사자의 자격</u> <u>인증·능력검정 및 경력관리에</u> <u>관한 사업</u>
<u><신 설></u>	10. <u>회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취</u> <u>업 지원·인턴십 연계 및 고용</u> <u>촉진 사업</u>
<u><신 설></u>	11. <u>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u> <u>및 보조금 사업의 수행</u>
8. (생 략)	12. (현행 제8항과 같음)
제6조(특별사업) (생 략)	제6조(특별사업)
1. <u>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u> <u>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u>	(현행과 같음)
2.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 을 위한 교육사업	

현행	개정안
3. (생략) 〈신설〉 제7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u>준회원으로</u> 구성한다. 1. ~ 2. (생략) 〈신설〉 제25조(서면의결 등) ①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u>대리인으로</u>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생략) 〈신설〉 제28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u>연 2회</u>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의장이 소집한다.	1.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배포 2. ----- ----- <u>및 자격과 정 운영</u> 3. (현행과 같음) 4. <u>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u> 제7조(회원) ----- ----- <u>준회원, 및 교육회원으로</u> -----. 3. <u>교육회원은 법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관련 기업 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u> 제25조(서면의결 등) ①----- ----- -----<u>대리인 또는 전자적 수단(화상회의, 전자투표 등)</u>으로 -----. ③<u>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은 출석으로 본다.</u> 제28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u>연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u> ----- -----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② (생략). <u><신설></u>	----- -----. <u>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u>
<u><신설></u>	<u>④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u>
제35조(재원) ①(생략) 1. ~ 3. (생략)	제35조(재원)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교육·연수 수수료 및 자격검정 수수료</u>
<u><신설></u>	<u>5. 정부 보조금 및 위탁사업 수입</u>
<u><신설></u> 4. (생략)	<u>6. 출판물·콘텐츠 판매 수입</u> 12. (현행 제4항과 같음)

4.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의안번호	제2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6. 3. 24.	

202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제 출 자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제출년월일	2026. 3. 24.

1. 제안사유

- 1) 정관 제23조 및 제37조에 의거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제출함.

2. 제안근거

- 1) 정관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5호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2) 정관 제38조 [결산]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5.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38조(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세입·세출결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②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첨부자료

2025년 세입·세출 결산

4.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234,721,124		232,232,357
(1) 당 좌 자 산		234,721,124		232,232,357
보 통 예 금		230,231,190		222,272,804
외 상 매 출 금		2,040,000		2,602,000
미 수 금		0		3,416,383
선 급 금		579,143		546,276
선 급 비 용		1,798,031		2,993,544
선 납 세 금		42,760		346,350
전 도 금		30,000		55,000
(2) 재 고 자 산		0		0
II. 비 유 동 자 산		90,648,982		130,703,795
(1) 무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19,482,282		54,276,428
비 품	23,322,730		22,262,73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883,565	7,439,165	11,490,019	10,772,711
시 설 장 치	223,088,000		223,088,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1,044,883	12,043,117	179,584,283	43,503,717
(3) 무 형 자 산		1,348,500		6,609,167
소 프 트 웨 어		1,348,500		6,609,167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9,818,200		69,818,200
임 차 보 증 금		69,818,200		69,818,200
자 산 총 계		325,370,106		362,936,152
부 채				
I. 유 동 부 채		45,508,853		26,452,530
미 지 급 금		10,417,764		14,889,310
예 수 금		3,498,920		2,888,300
선 수 금		22,905,870		6,994,000
미 지 급 비 용		8,686,299		1,680,920
II. 비 유 동 부 채		58,843,474		45,675,363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58,843,474		45,675,363
부 채 총 계		104,352,327		72,127,893
자 본				
I. 자 본		720,000,000		720,000,000
기 본 재 산		100,000,000		100,000,000
보 통 재 산		620,000,000		62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V. 결 손 금		498,982,221		429,191,741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미 처 리 결 손 금 (당 기 순 손 실)		498,982,221		429,191,741
당기 : 69,790,480 원				
전기 : 168,323,320 원				
자 본 총 계		221,017,779		290,808,25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25,370,106		362,936,152

손 익 계 산 서

제 8(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374,295,391		1,251,328,469
연 회 비	224,520,000		241,000,000	
입 회 비	32,000,000		36,000,000	
특 별 회 비	0		274,000,000	
법 정 교 육 매 출	126,830,000		140,449,000	
일 반 교 육 매 출	9,835,290		11,706,828	
기획인력교육수익(뉴딜)	0		5,600,000	
발 전 기 금	331,500,000		0	
보 조 금 수입_서울시	649,610,101		542,572,641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1,374,295,391		1,251,328,469
IV. 판매비와관리비		1,435,829,774		1,426,036,208
직 원 급 여	272,647,205		297,868,645	
상 여 급	3,398,523		5,125,867	
잡 급	3,000,000		0	
퇴 직 급 여	18,212,253		39,541,167	
복 리 후 생 비	7,517,891		12,636,900	
복 리후생비(4대보험)	21,123,960		27,972,060	
여 비 교 통 비	5,106,796		8,158,47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46,830,570		18,933,740	
통 신 비	4,563,427		3,477,940	
수 도 광 열 비	722,260		1,092,080	
세 금 과 공 과 금	226,750		436,990	
감 가 상 각 비	35,854,146		48,852,146	
지 급 임 차 료	162,561,790		159,975,265	
보 험 료	1,366,653		1,344,836	
차 량 유 지 비	7,134,239		9,537,762	
운 반 비	348,700		137,000	
도 서 인 쇄 비	759,500		4,686,710	
회 의 비	12,850		823,800	
소 모 품 비	10,906,738		15,310,350	
지 급 수 수 료	30,493,283		62,053,419	
광 고 선 전 비	1,098,022		4,531,826	
무 형 고 정 자산상각	5,260,667		8,470,000	
외 주 용 역 비	68,600,000		73,384,520	

손익계산서

제 8(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단위 : 원)

과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행 사 비	11,008,900		18,502,277	
행 사 비 _ 대 관	21,206,370		6,331,000	
행 사 비 _ 식 대	12,096,000		11,471,880	
협 회 비	10,000,000		11,000,000	
교 보 재 비	11,084,105		9,080,467	
업 무 추 진 비	13,078,075		22,726,450	
보조금지출_간담회비	0		478,650	
보조금지출_강사비	12,318,720		14,786,400	
보조금지출_교육여비	9,450,000		4,325,000	
보조금지출_노트북임차료	0		1,938,000	
보조금지출_면접위원수당	1,200,000		1,923,600	
보조금지출_사무용품비	132,000		294,850	
보조금지출_인쇄비	0		4,600,000	
보조금지출_전담인력인건비	49,716,130		46,743,440	
보조금지출_참여인력인건비	561,027,278		458,465,289	
보조금지출_홍보비	3,334,813		7,717,412	
보조금지출_회계감사비	1,400,000		1,300,000	
보조금지출_원고료	2,188,800		0	
보조금지출_교육비-교보재비	2,484,000		0	
보조금지출_교육비-교재비	3,920,000		0	
보조금지출_출장여비	635,000		0	
보조금지출_직업능력개발훈련비	1,680,000		0	
보조금지출_건강검진비	123,360		0	
V. 영 업 손 실		61,534,383		174,707,739
VI. 영 업 외 수 익		12,360,752		6,471,591
이 자 수 익	278,909		2,386,471	
잡 이 익	12,081,843		4,085,120	
VII. 영 업 외 비 용		20,616,849		87,172
기 부 금	17,980,000		0	
잡 손 실	2,636,849		87,172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손 실		69,790,480		168,323,320
IX. 법 인 세 등		0		0
X. 당 기 순 손 실		69,790,480		168,323,320

3

부속명세서

□ 전도금

(단위: 원)

구 분	기 초	차 변		대 변		기 말
내 용	이월잔액	전도금 입금	9,690,000	전도금 출금	9,715,000	기말잔액
누계	55,000	9,690,000		9,715,000		30,000

□ 임차보증금

(단위: 원)

구 분	기 초	입 금		출 금		기 말
내 용	이월잔액					기말잔액
누계	69,818,200					69,818,200

4

세입결산

2025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25년 세입	구성비	비 고
회비 (가)	입회비 수익	32,000	6	
	연회비 수익	224,520	38	
	발전기금	331,500	56	
	소 계	588,020	100%	
교육 (나)	법정교육수익	126,830	93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일반교육수익	9,835	7	
	소 계	136,665	100	
서울시 보조금 (다)	매력일자리 보조금	649,610	100	
	소 계	649,610	100	
영업 외 수익	영업외수익	12,361	100	이자수익, 대관수입 등
	소 계	12,361	100	
총 계		1,386,656		

□ 상세

가. 회비

(단위: 천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입회비	2,000	4,000	4,000	22,000	32,000
연회비	176,900	6,000	19,000	22,620	224,520
발전기금	96,000	87,500	49,000	99,000	331,500
계					588,020

나. 교육

(단위: 천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법정교육	26,270	39,210	36,180	25,170	126,830
일반교육	1,501	8,916	-1,427	845	9,835
계					136,665

2025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관	항	목	금 액	비 고
운영비	인건비	급여	275,647	
		상여	3,399	
		퇴직급여	18,212	
		복리후생비	28,642	
	일반운영비	지급임차료	162,562	
		소모품비	5,882	
		수도광열비	722	
		통신비	4,563	
		지급수수료	30,493	
		회의비	13	
		여비교통비	972	
		외주용역비	17,560	
	제세공과금	세금과공과	227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35,854	
	무형고정자산상각	무형고정자산상각	5,261	
	접대비	일반접대비	46,830	
	업무추진비		13,078	상근부회장 업무추진비
	행사비		11,009	시상식 참가비 등
	협회비		10,000	부경연 분담금
	보험료		1,367	매력일자리 보증보험
소 계			672,293	
교육비	외주용역비	강사료	51,040	
	행사비	강의실 대관료, 식대	33,302	11월 행사 대관 지출 포함(1,436)
	운반비	마케팅 비용	349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1,098	
	소모품비	소모품비	5,025	
	교재 인쇄, 교보재비	교재 인쇄, 교보재비	11,844	
	여비교통비	지방교육운영	4,134	
	차량유지비	렌트카비용	7,134	
	기타 비용	제비용		
소 계			113,926	
보조금지출_서울시			649,610	
소 계			649,610	
영업외 비용	기부금		17,980	
	잡손실		2,637	
소 계			20,617	
총 계			1,456,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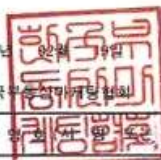
결손금처리계산서

제8(당)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제7(전)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2024년12월31일까지
 처분예정일 년 월 일 처분확정일 년 월 일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단위: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리 결 손 금		498,982,221		429,191,741
1. 전 기 이 월 미처리결손금	429,191,741		260,868,421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효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손 실	69,790,480		168,323,320	
II.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액	0		0	
2. 기 타 법 정 적립금이입액	0		0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액	0		0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입액	0		0	
5. 자 본 잉 여 금 이 입액	0		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0
1. 이 익 준 비 금	0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0	
가. 현금배당	0		0	
나. 주식배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리결손금		498,982,221		429,191,741

발급번호		재무제표확인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주소 또는 거주 (법인은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5층(논현동, 건설회관)			
	②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③ 전화번호	02) 3444 - 0073	
	④ 상호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⑤ 사업자 등록번호	824-82-00339	
	⑥ 성명 (대표자)	장영호	⑦ 주민(법인) 등록번호	135621-0007272	
	⑧ 사업의 종류	업태	교육	⑨ 종 목	위탁교육
	⑩ 용 도	기타		⑩ 수 량	1부
㉔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별도첨부)		과세연도 (사업연도)	재무제표 명칭		
		2025년01월01일	재무상태표		
		2025년12월31일	손익계산서		
별첨한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신청인		장영호 (대표이사인)	
상지회계법인 귀하					
첨부서류: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회계사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13층 1302호(문정동, 엠스테이트 빌딩)			
	등록번호	U-27761	전화번호		02-2135-1717
청부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상지회계법인					
본 재무제표확인을 세무서에 신고될 표준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보 고 서

1. 감사개요

본 감사는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제38조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2. 감사결과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수지현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6. 3. 10.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감사 김 종 현



의안번호	제3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6. 3. 24.	

202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출 자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제출년월일	2026. 3. 24.

1. 제안사유

- 1) 협회정관 제23조 및 제37조에 의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제출함.

2. 제안근거

- 1) 정관 제23조 [총회 의결사항] 제5항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2) 정관 제37조 [예산]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중략)

5.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37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서

(이하생략)

3. 첨부자료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4.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1

2026년 세입·세출 총괄(안)

(단위 : 천원)

과 목	'26 예산(안)	구성비	'25년 집행액	구성비
세 입	1,306,590	100	1,386,656	100
회비수입	596,000	45	588,020	42
교육수입	226,830	18	136,665	10
영업외수익	5,300	1	12,361	1
지방보조금_서울시	478,460	36	649,610	47
세 출	1,297,660	100	1,456,446	100
운영비	645,980	50	672,293	46
교육비	78,720	6	113,926	8
사업비	78,500	6	-	-
영업외비용	16,000	1	20,617	1
보조금지출_서울시	478,460	39	649,610	45

구 분	세입총계	세출총계	세입 - 세출
금 액	1,306,590	1,297,660	8,930

2

2026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관	항	목	금 액	비 고
회비수입/기타	회비	신규회원사 (입회비+연회비)	70,000	
		연회비(이사사)	340,000	이사사 17개사
		연회비(일반)	150,000	일반회원 100개
	발전기금	특별회비	36,000	니소스씨앤디
소 계			596,000	
교육수입	법정교육수익		126,830	
	AI교육수익		100,000	
소 계			226,830	
지방보조금_서울시	매력일자리 보조금		478,460	
소 계			478,460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300	
	잡이익(대관수익 등)		5,000	
소 계			5,300	
총 계			1,306,590	

관	항		목	금 액	비 고
운영비	인건비		급여	264,000	
			상여	26,400	
			퇴직급여	20,000	
			복리후생비	8,000	
			복리후생비(4대보험)	21,996	
	일반운영비		지급임차료	165,684	
			소모품비	4,000	
			수도광열비	1,200	
			통신비	2,400	
			지급수수료	24,000	
			회의비	1,200	
			여비교통비	800	
			외주용역비	16,000	디자인, 운영용역
			제세공과금		300
		감가상각비		19,500	
		무형고정자산상각		4,000	
		접대비		30,000	
		업무추진비		20,000	상근부회장 업무추진비
		행사비		5,000	시상식 참가비 등
		협회비		10,000	부경연 분담금
	보험료		1500	매력일자리 보증보험	
소 계				645,980	
교육비		외주용역비	강사료	33,000	
		행사비	강의실 대관료, 식대	19,000	
		운반비	운반비	960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960	네이버검색광고
		소모품비	소모품비	5,000	
		교재 인쇄, 교보재비	교재 인쇄, 교보재비	10,400	
		여비교통비	지방교육운영	4,000	
		차량유지비	렌트카비용	5,400	
		기타 비용	제비용	-	
소 계				78,720	
사업비	AI교육		외주용역비(강사료)	16,000	
			교보재비	25,000	
			구독료(실습)	15,000	
			중식비(수강생)	7,500	
		청약 FAQ DB·데이터 플랫폼		5,000	
		상담사 인증 포털 구축		5,000	
		창립 7주년 기념사 발간 등		5,000	
소 계				78,500	
보조금지출_서울시				478,460	
소 계				478,460	
영업외 비용		기부금	15,000		
		잡손실	1,000		
소 계				16,000	
총 계				1,297,660	

□ 참고 - 2026 매력일자리 사업 지출 세부내역

(단위: 원)

관	항	목	금 액	비 고
기타보상금 (인턴기업 지원금)		참여자 인건비	385,572	
		참여자 출장여비	1,3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담인력 인건비	50,832	
소 계			437,724	
사무관리비	교육비 31,790	교육여비(수당)	9,350	
		강사료(사전교육)	12,480	
		강사료(사후교육)	2,520	
		교육훈련 자문비	600	
		원고료	1,680	
		원고료(근무중교육)	720	
		교재비(사전교육)	1,760	
		교재비(근무중교육)	330	
		실습기자재 노트북	1,100	
		실습기자재 와이파이	590	
		실습기자재 AI구독	660	
	사업진행비 8,140	사업 홍보비 온라인	2,000	
		사업 홍보비 오프라인	1,000	
		참여자 선발 면접회의비	1,200	
		인턴 매칭데이 행사비	200	
		교육수료식(현수막)	100	
		교육수료식(수료증)	110	
		채용면접용 프로필	0	
		직업능력개발훈련	2,200	
		회계감사비	1,000	
		사무용품비	110	
		건강검진비	220	
소 계			39,930	
업무추진비		간담회비(참여자 선발)	54	
		간담회비	198	
		간담회비(워크샵)	198	
		다과비	176	
소 계			626	
국내여비			180	
소 계			180	
총 계			478,460	

의안번호	제4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6. 3. 24.	

2026년도 사업계획(안)

제 출 자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제출년월일	2026. 3. 24.

1. 제안사유

- 1) 협회정관 제23조 및 제37조에 의거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함.

2. 제안근거

- 1) 정관 제23조 제6항 [총회의 의결사항]
- 2) 정관 제37조 제1항 [예산]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중략)

6. 사업계획의 승인

제37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서

(이하생략)

3. 첨부자료

2025년 사업계획(안)

4.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1. 2025년 주요실적

1.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5.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 정책간담회

-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25.0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 정책간담회

-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25.02, 25.07) 수원도시공사 탐동 이노베이션밸리 간담회

- 탐동 이노베이션밸리 활성화, 첨단업무용지 개발 시행자 공모 관련 실무

(25.06) 'AI 기술 활용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문진석·이춘석·손명수
- 공동주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발제	소속	주제
황세은 상무	리파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
김정원 상무	YH데이터베이스	AI 기반 금융 FDS 사례
배우순 대표	디스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

(25.10) S.L. 포럼 정책간담회 (건설회관)

- 새정부 노동정책 동향, 건분법 상 계약해제 집단소송 대응, 지방 미분양 활성화

(25.10)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 활성화 자문회의

-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용률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개선 방안

2. 교육사업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법정교육: 총 30회 실시, 970명 수료 (11월 기준)

□ AI 활용 업무 생산성 향상 교육 (40시간)

항목	내용
과정명	AI 활용 업무 생산성 향상
기간	2025년 5월 26일(월) ~ 5월 30일(금), 총 40시간
대상	회원사 임직원 무료, 26명 수료

□ 회원사 AI 활용 세미나 (8회)

- (25.05) 생성형 AI와 노코드 자동화 툴 활용 마케팅 기획 생산성 향상
- (25.06) NotebookLM 활용 부동산 마케팅 기획 및 업무 자동화
- (25.07) 클로드 MCP 활용 업무 생산성 극대화 실전 노하우
- (25.08) MAKE · 바이브코딩 활용 부동산마케팅 데이터 수집 자동화
- (25.09) n8n 기초 및 AI 자동화 워크플로우 구축
- (25.10) n8n 기반 뉴스레터 자동화 및 원스톱 마케팅 실습
- (25.10) RAG 기반 AI 상담 챗봇 시스템 및 데이터 벡터화 구축
- (25.11) MCP 활용 부동산 블로그 콘텐츠 생성 및 글쓰기 자동화

AI 세미나 후원

조세윤 부회장 (씨앤디플래닝) : 300만원 후원
 이완직 부회장 (미도리얼코) : 300만원 후원
 김병수 부회장 (루시드프로모) : 150만원 후원
 배우순 대표 (디스코) : 150만원 후원
 김재구 부사장 (데이터노우즈) : AI 도서 50권 후원

□ AI 부트캠프 멤버십

- (25.04) (주)씨앤디플래닝 임직원 30명 대상 맞춤형 AI 실무 교육

3. 2025년 매력일자리 사업

□ 추진실적

- (25.02) 서울시 매력일자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25.04) 참여자 35명 선발, 사전 직무교육 84시간
 (마케팅기획실무 44H + AI활용업무생산성향상 40H)
- (25.06~11) 참여자 35명 회원사 인턴근무, 19명 정규직 채용연계

일자	내용	비고
02.25	서울시 매력일자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04.16	참여자 선발위원회 개최	
04.18	참여자 선발 결과 공고 (합격자 35명, 예비자 15명)	선발 완료
05.02~23	사전 직무교육 실시 (총 11일자 / 44시간)	마케팅 기획·실무
05.20	협력사업장-참여자 매칭데이 개최	회원사 매칭
05.21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최종 수료자 35명, 매칭률 100%)	전원 계약
05.26~30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총 5일자 / 40시간)	AI 활용 교육
06.19	참여자 국회 AI 정책 세미나 참관	전원참석
08.02	참여자 하계 워크샵 개최	17명 참석
11.11	제10회 부동산산업의날 참관 및 매력일자리 홍보부스 운영	
11.30	인턴근무 종료 (19명 정규직 채용연계, 채용연계율 54%)	완료

□ 2025년 매력일자리 후원

후원사	대표	후원 내용
직방 / 어반티	안성우 부회장/ 김예송 대표	사업 관련 푸시 알림 무상 후원
더퍼알커뮤니케이션	이성규 대표	홍보 영상 제작 및 파워블로그 노출 후원
분양통	오유진 대표	54만 유저 대상 영상 노출 및 홍보 후원
리얼투데이	김운철 대표	파워블로그 노출 후원
상가114	최용석 대표	상가114 사이트 회원 대상 홍보 후원
우드커뮤니케이션	김영택 대표	중앙·동아일보 참여자 홍보 노출 후원

4. 대외협력

□ MOU 체결

(25.12) 두레시닝 · 한국데이터경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주요 행사 · 수상

(25.09) 제11회 한경 집코노미 박람회 참가 (코엑스)

- 매력일자리 홍보관 및 AI 취업지원서비스 부스 운영

(25.11)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참가

-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조세운 부회장, 안상근 대표, 최지태 대표

(25.11) 2025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상 (고용친화 부문)

- 부동산마케팅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기여

5. 회원사 네트워킹

□ 정기 이사회: 월 1회, 총 11회 개최

월	일자	참석	주요 안건
1월	01.14	15명	정책 건의, 매력일자리, 교육, 회계
2월	02.11	12명	제4대 협회장 추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3월	03.11	14명	정기총회 안건 의결, 신규이사 선임(이완직)
4월	04.08	8명	산불피해 성금, 매력일자리 모집결과, SL포럼 오찬
5월	05.13	5명	국회 AI 교육 추진, 매력일자리 교육 개시
6월	06.10	8명	주택보증공사 간담회, 영남 산불 기탁 결과
7월	07.08	9명	진흥계획 의견서 제출, M-Lab 유튜브 론칭
9월	09.09	10명	집코노미 참가, 부동산산업의날, 회원사 가이드북
10월	10.14	8명	SL포럼 결과, 차기 수석부회장, 재정 안정화
11월	11.19	13명	수석부회장 선출, 전자계약 자문회의, 연회비 조정
12월	12.09	8명	매력일자리 결과(19명 채용), 두레시닝 MOU, 연탄봉사

□ 협회장-회원사 대표 석찬간담회 (3월~11월)

회차	일자	참석	석찬 후원	특이사항
4월	04.15	20명	장영호 회장	
5월	05.22	18명	심현태·임민섭 부회장	와이씨씨 최영창 대표 골프공+달러북 협찬
6월	06.19	16명	—	
10월	10.17	17명	조세운 부회장	박철수 대표 100만원 후원

□ 협회장배 골프대회 및 산악회 정기등반

5. 사회공헌 활동

(25.04) 대구지역 복지관, 나눔터 쌀 기부 (각 30포/총 60포)

(25.05) 영남지역 산불피해 성금 전달 (10,000,000원)

(25.12) 연말 연탄 나눔 릴레이 (총 5,000장 배달)

- 서울 중랑구 배나무마을 (2,000장), 서울 강북구 (3,000장)

연탄봉사 개인 후원

장영호 회장, 김선관·이월무·임민섭·조세운 부회장 : 각 100만원

김국기·오유진·유호석 대표 : 각 100만원 / 배우순 대표 : 50만원

산악회 단체모금 : 200만원 (이윤상 명예회장, 강창록 산악회장 등 14명)

2. 2026년 사업계획(안)

1) 2026년 시장환경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2026년에도 '공급 부족 현실화 →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관망 → 국지적 초양극화 고착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공급(분양) 물량 축소 및 공급 공백 현실화

-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8.3만 가구로 전년 대비 22.5% 급감, 2013년 이후 13년 만의 최저치 전망
- 서울 입주 물량은 약 1.8만 가구로 전년 대비 반토막(-43.5%), 도심권 신축 공급 절벽 가시화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약 18.7만 가구(공공 포함 시 약 21.7만 가구)
- 10대 건설사: 약 12만 가구 수준으로 사업성 확보 지역 중심 공급 확대 기조
- 중견 건설사: PF 조달비용 상승·미분양 리스크로 보수적 착공 기조 유지

□ 금융 및 청약 규제 환경 강화

-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적용(가산금리 100% 반영)으로 실질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 2026년 1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및 고액 주담대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부과 시행 → 금융권 대출 여력 감소
- 수분양자 자금 조달 압박 심화에 따라, 분양 현장에서 고객 맞춤형 '금융 컨설팅 솔루션' 제공 능력이 분양 성패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시장 정상화 및 공급 활성화 정책 추진

- 2026년 정부 SOC 예산 전년 대비 7.9% 증액(27.5조 원), 공공 분양

확대로 민간 공급 공백 보완 도모

-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6억 원 이하 & 85㎡ 이하) 매수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및 1세대 1주택 특례 2026년 말까지 연장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 기준 완화(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CR리츠 지방 미분양 매입 시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 서울·수도권 vs 지방 양극화 및 미분양 심화

- 2026년 민간 분양 물량의 58%(약 10.9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 서울은 전체 분양의 92%가 정비사업 물량 → 상급지·대단지 브랜드 쏠림 극대화
- 지방: 전국 악성 미분양의 83% 이상 집중, 구매력 한계·투자 수요 이탈로 시장 마비 우려
-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브랜드·입지·특화 커뮤니티 여부를 기준으로 한 철저한 '옥석 가리기(선별 청약)' 심화

2) 2026년 사업추진 방향

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정책개발

- 22대 국회 발의 법안 조속 통과 추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축물 분양대행업자·종사자 자격 기준 및 교육의무 기준 마련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부동산분양대행 정의 신설, 실태조사·통계구축 및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 마련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의한 수분양자 분양계약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6개 협회 공동 제도개선 건의
-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계획에 따른 분양대행업 실태조사 추진
 - 업계 규모·종사자 통계 구축을 바탕으로 분양대행업 관리·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 추진

□ 청약 FAQ DB 구축 및 데이터 플랫폼

- 현장 중심 청약 FAQ DB 구축·운영
 - 회원사 현장의 실제 질의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 민간주도 청약 FAQ 구축·운영 [정책분과위원회]
 - 청약 관련 도서 출판 추진
- 민관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 민간에서 축적된 청약 FAQ 데이터를 국토부 자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제공 체계 구축
- 마케팅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청약·경쟁율 등 마케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

□ 상담사 인증 포털 구축

- 실무역량을 갖춘 상담 인력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청약, 무순위, 선착순 분양 상담사)
 - 상담사 인증 포털 구축 [디지털정책분과위원회]
 - 시범 운영

□ 세미나·정책간담회

- S.L. 포럼-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5월 예정)
 - 주제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의한 수분양자 분양계약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집합건물법 및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 관련 대응 방안,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
 - 업계 현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 공유 및 정책 제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간담회 (하반기)
 -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및 여·야 간사실 정책간담회
 - 지방 미분양 해소, 분양대행업 제도화 등 회원사 현안 건의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 주관, 업계 현안 및 정책 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회원사 생성형 AI 업무 생산성 향상 세미나 [디지털정책분과위원회]
 - 분양 현장의 AI 활용 실전 사례 공유 및 도입 방안 중심

나. 교육사업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2025년 실적: 총 30회 실시, 1,022명 수료

- 2026년 계획: 총 23회 실시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지역별 월별 일정 편성)

- 법정교육 대상범위 확대 및 교육 커리큘럼 개선 지속 추진

구분	3월	4월	5월	6월	7~8월	9~10월	11~12월
서울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경기·인천	1회	1회	1회	-	1회	1회	1회
대전·부산	-	-	1회	-	-	1회	-

※ 상기 일정은 수요 및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AI 활용 업무생산성 향상 교육 (협회 법정교육 일정 대체)

- 공통·기초: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문서 요약
 - 문서·시각화: AI 기반 15분 보고서 이해 및 PPT 기획·제작 올인원
 - 콘텐츠·영상: 생성 AI(Sora, Veo 3 등) 활용 이미지·영상·숏츠 기획 및 제작
 - 리서치·R&D: 나만의 AI 연구 비서 구축, 보고서, 논문·특허 등 선행연구 탐색 및 인사이트 도출
 - 자동화·Agent: 비개발자를 위한 바이트코딩 기반 나만의 업무 맞춤형 Agent 제작
- 수강료 1인 20만원(회원사 20% 할인)
 - 정원 25명(소수정예), 1일 6시간

□ 부동산 마케팅 AI 실무 과정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 프롭테크의 발전과 생성형 AI 기술이 분양 마케팅 전 과정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조사, 가치 평가, 마케팅 콘텐츠 생성 등 전 밸류체인에 걸쳐 변화가 가속화
- 경영진 AI 역량 강화: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진의 AI 이해도를 높여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잘못된 투자 및 전략 지연 방지
-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대상 AI 도입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공부하는 협회',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

○ 커리큘럼(안)

프로그램명	부동산 마케팅 AI 실무 과정
주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디지털정책분과위원회)
교육대상	협회 회원사 대표 및 부동산 마케팅 관련 실무임원 (25명 소수정예)
교육방식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집중 운영 (1일 6시간 집중 워크숍 형태)
수강료	1인 100만원 (회원사 20% 할인 적용 시 80만원)

단계	과정명	주요 교육 내용
Tier 1	의사결정 지원 AI 파트너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요약, LLM 모델 비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리
Tier 2	전략 보고서 및 IR 자료 자동화	사업 제안용 고품질 문서 기획, 생성형 AI 원클릭 PPT 제작, 엑셀 데이터 시각화
Tier 3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영상 혁명	이미지 영상 AI 활용 브랜드 콘텐츠 기획, Text-to-Video 실습, 가상 모델 활용 분양 홍보 영상
Tier 4	시장 분석 AI 비서 및 경쟁 인텔리전스	부동산 정책·시장 데이터 실시간 분석, Perplexity 활용 심층 리서치, 경쟁사 동향 분석 봇 구축
Tier 5	조직 관리 자동화 및 AI Agent	바이브코딩(노코드) 툴 활용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사내 규정 Q&A 봇, 고객 응대 봇 기획

○ 기대 효과

- **업무 생산성 향상:** AI 활용을 통한 보고서 작성,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시간 획기적 단축
- **마케팅 혁신:** AI 기반 부동산 마케팅 혁신 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 기회 마련
- **아카이빙 활성화:** 협회 유튜브 채널 및 정책활동 영상에 AI 기술 적극 도입

□ 부동산 AI 실무역량 향상 과정 (온라인, 내일배움카드 환급형)

○ 추진 배경 및 법적 근거

- 부동산 마케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체계적 직무 교육 시급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9조에 의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 (필요시 휴넷 등 HRD 기관 협업 진행)
- 정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및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확산 기조에 부합 →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부동산 마케팅 및 개발 분야 재직자의 AI 활용 실무 능력을 극대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훈련 과정명	부동산 AI 실무역량 향상 과정
훈련 유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 환급형 / 집체훈련)
총 훈련 시간	총 30시간 (1일 6시간 × 5주 / 주말 집중 과정)
훈련 정원	25명 (소수정예 실습형)
훈련비	1,200,000원 (정부지원금 960,000원(80%) / 자부담금 240,000원(20%))
연간 운영	총 4기수 운영 (기수당 25명, 연간 100명 이상 양성 목표)

○ 추진 일정 로드맵

구분	주요 활동
과정 승인 (6~7월)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완료, HRD-Net 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 및 승인 획득
훈련생 모집 (8월)	모집 공고 게시 및 홍보 마케팅 집행, 훈련생 선발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훈련 운영 (9월)	5주간 주말 집체 교육 실시 (Tier 1~5), 출결 관리, 성취도 평가, 만족도 조사
정산/결과 (10월)	훈련비용 환급 신청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기 과정 개선사항 도출

○ 기대 효과

- **수료생 배출:** 연간 100명 이상의 AI 전문 부동산 인력 양성 (기수별 25명 × 4회)
- **업무 효율화:** 수료생 현업 복귀 후 문서 작성 시간 80% 단축 등 실질적 KPI 달성
- **수익 창출:** 협회 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 확보 (연간 순이익 6,800만원)
- **협회 위상:**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디지털 전환(DX)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다. 2026 서울 매력일자리 민간단체 협력형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AI 활용 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취지	서울시 신규 고용창출, 회원사 기획인력 구인난 해소
사업기간	2026년 2월 ~ 11월
총 사업비	478,460천원 (보조금 100%)

□ 정량 목표 및 교육 과정

참여자 모집율	교육 수료율	인턴십 참여율	정규직 전환율	사업만족도
120% (26명)	100% (22명)	100% (22명)	70% (15명)	80점 이상

- 사전 직무교육 (82시간): 기획인력 양성(36h) + AI 업무생산성 향상(42h)
- 근무 중 교육 (18시간): AI 활용 심화 (n8n · RAG · MAKE 기반 고객관리 및 콘텐츠 생성 자동화)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3월~4월	참여자 모집 및 선발위원회 개최 (22명 선발)	선발
4월	회원사-참여자 매칭데이 개최	매칭
5월	사전 직무교육 (82시간)	교육
6월	근무 중 교육 (18시간, AI 활용 심화)	교육
6월~11월	인턴근무 (6개월)	근무
11월	인턴근무 종료, 정규직 채용연계 (목표 15명)	완료

- 36개사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우수 회원사 우선 선정
 - '안정적 일자리' 연계를 최우선으로 정규직 전환율 70% 달성 목표 ※
2025년 실적: 35명 선발 → 19명 정규직 채용연계 (채용연계율 54%, 교육시간 84시간)

라.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부경연) 협력체계 강화

-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 참가 및 협회 위상 강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여·야 간사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
- 부경연 단체 업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공유 및 정책 제안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산학협력

- 정책세미나 공동 주관 (업계 공동 현안 및 정책 대안 논의)
- 부동산 마케팅 관련 정책연구 협업 추진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단 친선 골프대회

□ 한국프롭테크포럼 업무제휴

- AI 및 프롭테크 활용 부동산 마케팅 활성화 협업 추진
- 정책세미나 공동 주관 (업계 공동 현안 및 정책 대안 논의)

□ 한국부동산원 업무제휴

- 청약제도 발전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확대 및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부동산분양대행업 실태조사 추진

□ 회원사 네트워킹 강화

- 협회장-회원사 대표 석찬간담회 (매월 1회)
- 협회장배 골프대회, 산악회 정기등반 개최 등 회원사 간 교류 확대

□ 창립 7주년 기념 사업

- 창립 7주년 기념식 개최 및 미래 비전 선포
- 공로 회원사·유공자 시상

□ 회원사 소통 채널 고도화

- 협회 공식 뉴스레터 정기 발간 (월 1회)
- 회원사 가이드북 업데이트 및 배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비 및 실시간 소통 체계 강화

마. 협회 조직 역량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 디지털정책분과위원회 / AI 정책분과 활성화

- 위원장: 고승일 (니소스씨앤디), 부위원장: 황근호 (미래인)
- AI 기반 부동산 마케팅 혁신 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
- 회원사 AI 도입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협회 유튜브 채널 AI 활용 활성화

□ 정책 분과위원회 활성화

- 위원장: 이월무 수석부회장 (미드미네트웍스 대표이사)
- 부위원장: 심현태 부회장 (엠비엔홀딩스), 안상근 부회장 (니소스씨앤디)
- 22대 국회 발의 협회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추진
- 분양대행업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추진
- S.L. 포럼 정책간담회(5월)
- 국회 국토교통위 정책간담회(하반기) 개최

□ ESG 분과위원회 활성화

- 위원장: 김병수 (루시드프로모), 부위원장: 배우순 (디스코)
- 사회공헌 활동 체계화
 - 연말 연탄 나눔 봉사 (2025년 5,000장 실적 이상 목표)
 - 재난·재해 성금 기탁 등 나눔 활동 지속
 -

□ 홍보분과위원회 활성화

- 위원장: 천연재 (애드파워), 부위원장: 최영창 (와이씨씨)
- 협회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대외 홍보 강화
 - 협회 뉴스레터 정기 발간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회원사 가이드북 업데이트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 이사회 활성화 및 구조 쇄신

- 신임 이사 5인 선출: 김국기, 안상근, 안성우, 이혁, 천연재
- 이사회 정기 개최를 통한 협회 거버넌스 강화
 - 매월 정기이사회 + 하기 이사 단합대회 개최

의안번호	제5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6. 3. 24.	

임원 (이사) 선출의 건

제 출 자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제출년월일	2026. 3. 24.

1. 제안사유

- 1) 정관 제14조 및 제23조에 의거 신규 임원을 선출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1) 정관 제14조 [임원의 선출]
- 2)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
- 3) 정관 제23조 [임원의 임기]

제14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원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③회원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상임이사 1인은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이하생략)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3. 신규임원

구분	성명	회원사명	직책
이사	김국기	(주)더큐브그룹	대표이사
이사	안상근	(주)니소스씨앤디	대표이사
이사	안성우	(주)직방	대표이사
이사	이준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이사	이혁	(주)혁본	대표이사
이사	천연재	(주)에드파워	대표이사

□ 주요약력

성명	약력
김국기	- (주)더큐브그룹 대표이사 (2017.11 ~ 현재) - 호텔1가 대표이사 (2021.11 ~ 현재) -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상 대상 (2025) - 대한민국 건축·부동산 문화진흥 대상 (2019)
안상근	- 現 (주)니소스씨앤디 대표이사 - 국토교통부 장관상(2025) - 2025년 발전기금 기탁 (24,000,000원)
안성우	- 現 (주)직방 대표이사 (협회 활동 : 이병택 이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9) - (사)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 (2018~2024)
이준영	- (現)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 특보단 상임부단장 - (前) 한국철도공사(KORAIL) 대외협력실장 (국회·정부·언론 대응총괄) - (前)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 (대외협력 및 정책 대응) - (前) 국회의원 보좌관 (2000~2017) / 국토위·정무위·예결위 등
이혁	- 現 (주)혁본 대표이사 - 2025년 발전기금 기탁 (20,000,000원)
천연재	- 現 (주)애드파워 대표이사 - (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 Art&Culture 포럼 위원장 -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홍보분과 위원장(2025)

□ 취임일

2026년 3월 24일

4.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정 관

제정 2019년 05월 16일
개정 2019년 09월 16일
개정 2021년 01월 06일
개정 2021년 11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25일
개정 2024년 05월 07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Real Estate Marketing service Association”로, 약칭은 “KREMA”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과 제도개선 등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법인은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5층(논현동, 건설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登記 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약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그 이력관리
4.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자율정화 등 이미지 개선 활동
5.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홍보활동
6.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사업)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1.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2.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3.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로서 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법인업체 또는 개인업체로 한다.
2. 준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부동산 관련단체 또는 건설업체 등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업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인은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법인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2. 법인의 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부동산 마케팅 사업자의 품위유지 의무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
4. 법인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직에서 해임된다.

1. 징계처분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
2. 회원이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회비 납기 기한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정지를 결의한 때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관련 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었을 때
2.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②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원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③회원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상임이사 1인은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다만, 회원이사가 임기 중 정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정회원으로부터 면직된 때에는 당해 정회원의 후임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새로 지정하는 자가 잔임기간 동안 회원이사로 보선된 것으로 본다.

④감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결위되거나 임원회의에 장기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조속히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임원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5인 이내의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90일 이내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⑤회원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⑦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유기 또는 태만,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법인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격이 상실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 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법인은 명예회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회장으로 하며, 고문은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등) ①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고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목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 시에는 회장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2. 법인의 청산, 해산결의
3. 정관의 제정 및 변경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4조(의결방법) ①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3조 제1호 중 임원의 해임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서면의결 등) ①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총회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최 및 폐회의 연월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회원 및 결석회원
4. 보고사항
5. 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의제
6. 결의사항
7. 발언요지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일시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9. 부회장 및 상임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12.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1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청원 및 복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6.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17. 기타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사무국 등

제31조(사무국 등) ①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법인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설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시 관련 공무원, 교수 및 외부인사를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촉, 구성,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급여)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및 퇴직금, 근로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의2(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계연도)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회장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의 결의를 받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회비) ①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다.

1. 입회비라 함은 법인에 가입과 동시에 납입하는 가입비를 말한다.
2. 기본회비라 함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법인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업 또는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찬조금, 기부금품 및 별도의 회비를 말한다.

②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서

제38조(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세입·세출결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②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9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포상) 회장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법인 사업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하여 법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결의로써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2. 부동산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회원으로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를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법인의 조회응답 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②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③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42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이 결의로서 변경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때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11장 보 칙

제43조(규정 및 내규) ①법인은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해산) ①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의4(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3조의5(선거운동 관여 금지)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6(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부동산마케팅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발기인은 본 법인 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설립등기 완료시까지 총회의 권한은 발기인회가 이를 대행하며 추인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